

재입학 선발 관련 규정 및 여석산정 기준

구 분	규 정 내 용	비 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2	<p>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p> <p>② 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06.1.13]</p>	
학칙 제14조	<p>① 퇴학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한다. (개정 1998.7.1)</p>	
학칙 부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16.05.12. 2016학년도 제2차 임시 교무위원회></p> <p>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모집단위 신설,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 학생은 해당 학생의 입학년도 소속으로 본다. 다만, 복학 또는 재입학 학년이 2017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과 동일한 학년일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속을 선택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어독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독일어문.문화학과 소속 2. 불어불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프랑스어문.문화학과 소속 3. 일어일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일본어문.문화학과 소속 4. 중어중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중국어문.문화학과 소속 5. 융합보안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융합보안공학과 소속 6. 생명과학.화학부 화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화학과 소속, 생명과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바이오생명공학과 소속 7. IT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컴퓨터공학과 소속, 정보시스템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정보시스템공학과 소속 8. 청정융합과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소속 9. 의류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의류산업학과 소속 10. 메이크업디자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뷰티산업학과 소속 11. 생활문화소비자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소속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21.02.19. 2020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p> <p>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사항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p>	

② (모집단위 신설,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해당 학생의 입학 연도 소속으로 본다. 다만, 복학 또는 재입학 학년이 2021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과 동일한 학년일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속을 선택할 수 있다.

1. 경영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2. 글로벌비즈니스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 글로벌비즈니스전공
3. 사회복지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4. 법학과, 지식산업법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법과대학 법학부
5. 수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대학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수학전공
6. 통계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대학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통계학전공
7. 화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대학 화학·에너지융합학부 화학전공
8. 정보시스템공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지식서비스공과대학 AI융합학부 AI전공 또는 지능형IoT전공
9. 글로벌의과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Health & Wellness College 바이오신약의과학부 글로벌의과학전공
10. 식품영양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Health & Wellness College 바이오헬스융합학부 식품영양학전공
11. 스포츠레저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Health & Wellness College 스포츠과학부 스포츠레저전공
12. 운동재활복지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Health & Wellness College 스포츠과학부 운동재활전공

③ (모집단위 신설,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예외사항) 법과대학 법학과, 지식산업법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2021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과 동일한 학년이 아니더라도, 동 대학 법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이때 교육과정 및 졸업요건은 입학 연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하며 기존 학과 소속으로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2023.02.21. 2022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 / 2023.03.22. 2022학년도 제8차 이사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③ 생략

④ (모집단위 신설,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해당 학생의 입학 연도 소속으로 본다. 다만, 복학 또는 재입학 학년이 2024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과 동일한 학년일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소속을 선택할 수 있다.

1. 국어국문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인문융합예술대학 국어국문학과
2. 영어영문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인문융합예술대학 영어영문학과
3. 독일어문·문화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인문융합예술대학 독일어문·문화학과
4. 프랑스어문·문화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인문융합예술대학 프랑스어문·문화학과
5. 일본어문·문화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인문융합예술대학 일본어문·문화학과
6. 중국어문·문화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인문융합예술대학 중국어문·문화학과
7. 사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인문융합예술대학 사학과
8. 문화예술경영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인문융합예술대학 문화예술경영학과

- 9. 미디어영상연기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인문융합예술대학 미디어영상연기학과
- 10.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인문융합예술대학 현대실용음악학과
- 11. 무용예술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인문융합예술대학 무용예술학과
- 12. 산업디자인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미술대학 디자인과

부 칙

<2024.04.12. 2024학년도 제2차 정기교무위원회 / 2024.04.23. 2024학년도 제1차 이사회>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전 학칙의 부칙 개정) 대학 학칙의 이전 부칙<2023.02.21. 2022학년도 제5차 대학 평의원회/2023.02.22. 2022학년도 제8차 이사회> 제4항 제12호에도 불구하고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에 재적 중인 자는 미술대학 디자인과 재적생으로 보고, 이는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③ (모집단위 신설, 변경에 따른 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현재 재적생은 아래와 같은 소속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소속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 1.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와 뷰티생활산업국제대학 글로벌비즈니스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재적생으로 한다.
 - 2. 뷰티생활산업국제대학 의류산업학과, 뷰티산업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각각 생활산업대학 의류산업학과, 뷰티산업학과 재적생으로 한다.
 - 3. 뷰티생활산업국제대학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생활산업대학 소비자산업학과 재적생으로 한다.
 - 4. Health & Wellness College 바이오신약의과학부에 재적 중인 자는 공과대학 바이오신약의과학부 재적생으로 한다.
 - 5. Health & Wellness College 바이오헬스융합학부에 재적 중인 자는 자연과학대학 바이오헬스융합학부 재적생으로 한다.
 - 6. Health & Wellness College 스포츠과학부에 재적 중인 자는 생활산업대학 스포츠과학부 재적생으로 한다.
 - 7. 지식서비스공과대학 융합보안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바이오식품공학과, 바이오생명공학과, AI융합학부에 재적 중인 자는 각각 공과대학 융합보안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바이오식품공학과, 바이오생명공학과, AI융합학부 재적생으로 한다.
 - 8. 지식서비스공과대학 서비스·디자인공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공과대학 서비스디자인공학과 재적생으로 한다.
 - 9. 지식서비스공과대학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공과대학 청정신소재공학과 재적생으로 한다.

학사규정 제60조

- ①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와 자진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정과 관련된 학과(부)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8.3.1, 2009.9.1)
- ②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로부터 두 학기(제적된 학기는 포함하고, 계절 학기는 제외)경과 후 1회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3.1, 2009.9.1)
- ③ (삭제 1998.3.1)
- ④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등록기간에 소정원서를 학사운영팀에 제출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3.1., 2020.2.1)
- ⑤ (삭제 2023.2.22.)

	<p>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모집단위별로 허가하되,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학과(부) 혹은 총장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09.9.1)</p> <p>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신설 2009.9.1)</p>	
<p>여석산정</p>	<p>1. 2025. 9. 1. ~ 2026. 2. 28. 제적자 중 3, 4학년 인원</p> <p>2. 정원내외 각각 구분하여 선발 ※ 정원외의 경우, 2025-2학기까지 세부 입학전형별 여석을 산출하여 선발하였으나, 2026-1학기부터 입학전형 구분없이 총 정원으로 선발함(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사지원팀 학사지원누리집 확인사항: 2025.12.03.)</p> <p>3. 사범대 및 간호학과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모집정원 규정에 따라 별도로 여석 산출</p> <p>4. A학과 정원외 여석을 B학과의 정원외 여석으로 사용가능. 단, 사범 대학 및 간호학과는 제외</p>	